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확대 및 안전성평가 근거 신설 등>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81호)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86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Ⅰ. 개요 ····· 1

【양부남의원안】

1. 제안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이달희의원안】

1. 제안경위 ·····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Ⅱ. 검토의견 ····· 3

1.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확대 및 안전성평가 근거 마련(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 3
2. 유아교육진흥원 소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교육장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이달희의원안) ····· 21
3.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명확화(이달희의원안) ····· 24
4. 사고보고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신설(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 27
5. 시설 신고의무·안전성평가 실시 의무·안전성평가 결과 기록 보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 29
6. 부칙 ····· 33

Ⅰ. 개　요

【양부남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7.

(3) 회부연월일 : 2025.　6.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안】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달희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7.

(3) 회부연월일 : 2025.　6.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Ⅱ. 검토의견

1.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확대 및 안전성평가 근거 마련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포함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개정, 동 조 제7의2호 및 안 제15조의3 신설 등).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6.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6.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	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6의2. (생 략)	6의2. (현행과 같음)	6의2. (현행과 같음)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시설 결함에 의한 위험요인----------.	7.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
<신 설>	7의2. “안전성평가”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7의2. “안전성평가”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해당 어린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유형을 식별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를 조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8.·9.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		3의2.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또는----------안전점검, 안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5. (생 략) ④ · ⑤ (생 략)		전성평가 또는---------- 4.·5.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②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개시하기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5조의3의 안전성평가를 실시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① ----------설치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② 설치자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 받거나,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하기 ----------.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성평가----------.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제11조제1항----------.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제11조제1항의----------.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② ~ ④ (생 략)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점검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안전성평가 실시) ① 설치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설치자 및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여야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 제15조의3제1항, 제16조제1항----------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① ----------제15조제1항, 제15조의3제2항 및----------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② (현행과 같음)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을 신고하고,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임[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행법 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제도 >

① 설치검사	
근거	법 제12조제1항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
시행주체	안전검사기관
시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② 정기시설검사	
근거	법 제12조제2항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적 위험요소에 대해 검사장비를 통해 자격 있는 검사원이 정량적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시행주체	안전검사기관
시기	2년에 1회 이상, 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③ 안전점검	
근거	법 제15조
정의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는 점검
시행주체	관리주체(소유자)
시기	매월(1회 이상)
④ 안전진단	
근거	법 제16조
정의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재사용 여부 등을 진단
시행주체	안전검사기관
시기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3-9. (생략)

2023년 7월, 28개월 된 어린이가 무인키즈풀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러한 '무인키즈풀'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외의 놀이터'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의 비교 >

구분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 적용 ○)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법 적용 ×)
예시		
	미끄럼틀, 시소 등	욕조(물놀이용), 직물형태의 기구
특징	표준화·정형화된 제품(공산품)	현장에서 설치·시공하여 비정형화(다양한 형태로 변형)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신종·유사 놀이시설 실태조사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2] 대상 안전관리 방안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2025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유형 별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안전성평가’ 시행을 권고하는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안내하였음.

그러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과 달리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의 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제도를 적용할 법률적 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임.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평가 개요 [신종 · 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개요

○ (안전성평가의 정의)

-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그 위험을 감소시키는 과정

○ (안전성평가의 목적)

- 시설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어린이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잠재적인 사고위험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 평가 방법

○ 평가 주체 : **관리주체**(사업주)

○ 평가 대상 : 어린이놀이에 활용되는 공간 중 관련법(어린이놀이시설법, 관광진흥법 등)상의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신종·유사 놀이시설**

○ 평가 주기 : **월 1회**(의무)

○ 평가 절차

위험요소 식별		위험요소 저감		관리·재검토
- 놀이요소·유형 파악 - 발생가능한 사고유형 식별 -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 평가	▶	- 위험요소 제거 (시설보완, 기구이동 등) - 위험 감소 대책 수립·실행	▶	- 평가결과 공유·게시 - 위험 모니터링 - 추가적인 평가 필요성 검토

개정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무인 키즈카페, 무인키즈풀과 같은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키면서, 해당 장소에 적용할 '안전성평가'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안전관리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 반영 시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 >

구 분	무인 키즈카페		무인 키즈풀	
전체	518개소		381개소	
놀이시설 여부	놀이시설	非놀이시설 (놀이기구 미설치)	놀이시설	非놀이시설 (놀이기구 미설치)
현황	495	23	43	338
	↳ 현행 제도	↳ 신규 제도 (안전성평가)	↳ 현행 제도	↳ 신규 제도 (안전성평가)

자료 : 행정안전부

<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 분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어린이놀이시설 범위 (안 제2조제2호)	현행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현행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
안전성평가 정의 (안 제2조제7의2호)	사고유형 식별 + 위험요소 조사 + 개선	사고유형 확인 + 위험요소 조사
안전점검 실시 (안 제15조제1항)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모든 어린이놀이시설 (현행 유지)
안전성평가 실시 (안 제11조 제2항, 안 제15조의3)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 관리주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 관리주체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른 이용금지 (안 제15조의3)	관리주체는 위해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금지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금지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전성평가의 정의(안 제2조제2호)와 관련하여 이달희의원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반면, 양부남의원안은 조사 이후 개선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도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이를 감소시키는 것을 안전성평가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평가의 정의에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 활동을 포함하는 안이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둘째, 안전점검 실시(안 제15조제1항)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양부남의원안은 이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범위를 축소하면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성평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이달희의원안은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음.

현행법의 '안전점검'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어린이놀이기구의 결함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고 보임.

< 안전점검과 안전성평가 비교 >

구 분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근거	현행법 제15조	**현행법 근거 無** (가이드라인 운영)
대상	**놀이기구** 중심**(정형화)**	**놀이공간** 중심**(비정형화)** *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경우 (재질·규격 등이 표준화되지 않고 내부 공간에 맞게 시공)
주체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주체(소유자)**
항목	**정량적** 항목 중심 * 그네좌석 파손, 금간곳, 볼트·나사 풀림 등 **시설적** 위험요소	**정성적** 항목 중심 * ~위험 여부, ~장애물 여부, ~위험 안내 여부 등 **관리적** 위험요소
주기	매월(1회이상)	매월(1회이상)
방법	**관리주체**가 **육안**으로 위험요인을 조사	**관리주체**가 **육안**으로 위험요인을 조사

자료 : 행정안전부

따라서,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성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공백 없이 적절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유무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방안 >

의무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有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無
설치자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관리주체 (소유자)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함

셋째,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 및 결과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안 제15조의3)와 관련하여 양부남의원안은 이용금지 조치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이용금지 요건을 '안전성평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이달희의원안은 주체를 '설치자 및 관리주체'로, 이용금지 요건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개정안 모두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설치자와 관리주체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도 ①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② 관리주체가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3],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안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안전관리 방안이라고 보임.

넷째, 조문 체계와 관련하여 두 개정안 모두 어린이놀이기구가 없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신고, 안전성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설치자와 관리주체가 각각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여, ① 설치자의 안전성평가 실시 규정은 현행법의 설치검사에 대비하여 설치검사 등과 관련된 조문(안 제12조)에, ② 관리주체의 안전성평가 실시 규정은 현행법의 안전점검에 대비하여 개정안과 같이 별도의 조문(안 제15조의3)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 등의 이용금지 및 개선)** ①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어린이 등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 조문 체계를 고려한 수정안 >

구 분	개정안	수정의견
설치자의 안전성평가 실시	(양부남의원안) 안 제11조 제2항 (이달희의원안) 안 제15조의3 제1항	**안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규정
관리주체의 안전성평가 실시	(양부남의원안) 안 제15조의3 제1항 (이달희의원안) 안 제15조의3 제2항	**안 제15조의3 (안전성평가 실시)**에 규정

행정안전부는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을 제시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의 범위를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해당 장소에 대해서는 신규 제도인 안전성평가를 적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임.

2. 유아교육진흥원 소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교육장의 관리·감독 의무 부여(이달희의원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서 교육장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가목).

현 행	이달희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생 략)	제2조(정의) ----------. 3. ----------. 가. ----------유치원,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나. (현행과 같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21년 6월)으로 2022년 6월부터 전국 19개소의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적용의 대상이 되었으나,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체가 시·도 교육청인 것과 달리 현행법에 따르면 유아교육진흥원에 소재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어[4]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현황(19개소) >

시 설 명	소 재	시 설 명	소 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서울 종로구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강원 춘천시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부산 사하구	충북유아교육진흥원	충북 청주시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분원)	부산 기장군	충남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충남 홍성군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대구 달서구	충남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북부체험교육원	충남 아산시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인천 서구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전남 순천시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광주 광산구	전북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전북 익산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대전 중구	전북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석교분원	전북 김제시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울산 북구	경남교육청유아교육원	경남 창원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세종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 서귀포시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경기 평택시	-	-

자료 : 행정안전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하려는 입법조치로 보임[5].

행정안전부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을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동 개정안의 입법을 통해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임.

5)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이 교육장임.

3.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 명확화(이달희의원안)

현 행	이달희의원안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개정안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로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법은 ‘물을 활용한’ 모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시설별로 1명 이상의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안전요원 배치의 주 목적은 익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다만, 물을 채우지 않는 형태의 기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2024년 말 기준 전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1,102개 중 약 4%에 해당하는 45개에 불과하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총 13건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사례 중 물을 채우지 않는 형태의 기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물을 채우지 않는 형태의 기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

버킷형	기타 물놀이기구(분사형)	

자료 : 행정안전부

[2020년 이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사고(13건) 현황]

연도별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건	1건	1건	3건	2건	1건
시설 유형별 현황					
물을 채우는 형태			물을 채우지 않는 형태		
13건			0건		
사고 원인별 현황					
시설 결함		이용자 부주의		기타	
1건		11건		1건	
사고 피해별 현황					
사망			부상 등		
1건			12건		

자료 : 행정안전부

개정안은 사고 위험이 높은 물을 채우는 형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요원 배치 의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요원 배치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됨.

행정안전부는 「물환경보전법」상 물놀이 수경시설과 같은 유사 사례[6]를 토대로 할 때, 개정안과 같이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익사 사고 위험이 있는 '물을 채우는 형태의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6) '물을 채우지 않는' 형태인 「물환경보전법」 상 물놀이형 수경시설(바닥분수, 인공폭포·연못 등)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4. 사고보고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 신설(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개정안은 일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사고보고의무 이행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의 형식과 내용,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해당 사고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의 사고보고의무 이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제각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고발생 후에도 지연 통보하는 사례가 있고, 지연 통보한 경우 사고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과태료 등 관련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7], 개정안과 같이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사고보고를 하는 방법과 절차, 보고기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사고조사보고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하고 있으나 일부 관리주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보고하는 사례도 있어, 보고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위임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사고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연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과태료의 실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5. 시설 신고의무·안전성평가 실시 의무·안전성평가 결과 기록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개정안은 ①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설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며, ② 안전성평가 미실시 또는 실시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함께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제1호 신설 등).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제31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 않거나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	2. (현행 제1호와 같음)

현 행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하지 아니한 ---	
<신 설>		3.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안전전검 및 안전성평가, 안전진단----------	4. ----------안전점검, 안전성평가 및 안전진단----------
3.·4. (생 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구 분	현 행 법	개정안(양부남·이달희의원안)
사고보고의무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 설치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안전점검·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안전점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안전점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첫째,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 시설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의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설치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8],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어, 과태료와 같은 제재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를 통한 안전관리 책임 소재 확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참조할 때,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과태료 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

구 분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부과 요건	어린이놀이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 자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 자
과태료 금액	300만원 이하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 ① 설치자는 제11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평가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 안전성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실시·기록 보관 의무 불이행에 대해 일정한 행정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또한,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관련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준과 비교하여,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성평가 관련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의 정도는 균형적인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행정지도만으로는 안전관리 이행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6. 부칙

개정안은 시행일과 관련한 부칙을 두고 있는데, 양부남의원안과 이달희의원안 모두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달희의원안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안전성평가 전 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와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개정안의 부칙 내용 비교 >

구 분	양부남의원안	이달희의원안
시행일	공포 후 1년	공포 후 1년 (단,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하는 안 제2조제3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경과조치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 전에 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안 제11조의2제1항)를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행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안 제15조의3제2항)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행

첫째, 시행일과 관련하여 안전성평가 관련 주기·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하므로, 시행일은 개정안과 같이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이달희의원안과 같이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하는 내용의 조문은 하위 법령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시행일 부칙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둘째,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경과조치는 신법에서 구법에는 없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구법 질서에 대한 수범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9], 기존에 안전성평가 실시 전 시설 신고 및 안전성평가 실시에 관한 의무가 없었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일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의무 이행을 통해 신법에서 규율하는 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과조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

9) 국회 법제실(2019), 「법제이론과 실제」, p.733